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계약하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인정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월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구분	금액(원)		내역		
본인 부담 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나)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제공시간	30분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차량 미이용(육조목욕)	60분 이상	50,100
차량 내 목욕	60분 이상	88,990
차량이용 (가정 내 목욕)	60분 이상	80,23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기관의 의무 운영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매일 09시부터 18까지로 한다(공휴일제외) *

